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6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중도 및 일부 시·군 새마을 단체가 사단 법인등록을 함으로써 명칭이 변경되었음

○ 위와 관련하여 명칭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불합리한 용어 및 자구 정비(제1조 및 제3조)

○ 새마을운동 관련 명칭 정비(제4조 및 제5조)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 새마을운동중앙회
- 새마을중앙협의회도지부 → 충청북도새마을회
- 도지부회장 → 도새마을회장
- 시·군지회장 → 시·군지회장, 시·군새마을회장

※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시·군지회는 기존 명칭 사용

3. 의안전문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없 음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자녀"를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 한다.

제3조중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지도자"로 한다.

제4조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군지회장"을 "새마을운동중앙회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 새마을회장"으로 하고, "새마을중앙협의회도지부(이하 "도지부"라 한다)"를 "충청북도새마을회(이하 "도 새마을회"라 한다)"로 하며, "시·군 새마을지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을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 지부회장"을 "도 새마을회장"으로 하고,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도 지부회장"을 "도 새마을회장"으로 한다.

제10조중 "항구적 발전과 조국근대화"를 "항구적 발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자녀로서 ········ ································· ································· ································· ·································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제3조(장학생의 자격) ················ ······························새마을지도자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군지회장(이하"시·군지회"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중앙협의회도지부(이하"도지부"라 한다)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시군지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 새마을운동중앙회 시·군지회장 또는 시·군 새마을회장·················· ················ 충청북도새마을회(이하 "도 새마을회"라 한다)········ ································ ······ 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회장············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선정) ① 도지부회장이 시·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도 도 교육감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학기 개시 20일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5조(선정) ① 도 새마을회장 ··········· ································· ································· ································· 새마을운동중앙회장 ···················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생 략) ② 시·군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도 새마을회장·· ································· ························
제10조(장학생의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생의의무) ··················· ································· 항구적 발전 ························· ····